

# 1. 가이아나(Guyana)

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분	2017	2019	비고
적용대상	근로자, 자영자	근로자, 자영자	임의가입 : 9.3%
보험료율(가입자/사용자)	14% (5.6% / 8.4%)	14% (5.6% / 8.4%)	-
노령연금 수급요건	납부 및 인정기간 750주 이상 (납부기간 150주 이상 포함), 60세	납부 및 인정기간 750주 이상 (납부기간 150주 이상 포함), 60세	-
노령연금 지급률	60%	60%	-
일시금	납부 및 인정기간 매 50주당 가입자 연소득의 8.33% 의 일시금	납부 및 인정기간 매 50주당 가입자 연소득의 8.33%의 일시금	-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03(구빈제도), 1944년(노령부조), 1969년(사회보험)

## 2 제도형태

- 보편적 제도,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

## 3 적용대상

- 보편적 제도
  - 가이아나 거주시민
- 사회보험
  - 당연적용 : 주당 소득이 G\$7.50 이상인 모든 공공·민간부문 근로자; 주당 소득이 G\$5 이상인 자영자
  - 임의적용 : 이전에 의무가입자였던 사람(60세까지)
  - 적용제외 : 임시근로자, 가족근로자
- 사회부조 : 가이아나 빈곤층

### ○ 가입자

- 보편적 제도 : 없음
- 사회보험
  - 소득의 5.6%. 임의가입자는 근로 중단 전 최종 2년간 평균 주당 소득의 9.3%
  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상한 소득 : 주 G\$59,262, 월 G\$256,800(매년 조정)
  - 보험료는 고용상태에 따라 주납, 격주납 또는 월납으로 상이
  - 근로자의 보험료는 상병, 출산, 의료, 산재 급여의 재원도 됨
- 사회부조제도 : 없음

### ○ 자영자

- 보편적 제도 : 없음
- 사회보험
  - 신고 소득의 12.5%
  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하한 소득 : G\$68,750
  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상한 소득 : 주 G\$59,262, 월 G\$256,800(매년 조정)
  -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주납, 격주납 또는 월납으로 상이
  - 자영자의 보험료는 상병, 출산, 의료 급여의 재원도 됨
- 사회부조 : 없음

### ○ 사용자

- 보편적 제도 : 없음
- 사회보험
  - 임금지급액의 8.4%(주납, 격주납 또는 월납); 16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.5%
  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하한 소득 없음
  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상한 소득 : 주 G\$59,262, 월 G\$256,800(매년 조정)
  -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주납, 격주납 또는 월납으로 상이
 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상병, 출산, 의료 급여의 재원도 됨
- 사회부조 : 없음

### ○ 정부

- 보편적 제도 : 총 비용
- 사회보험 : 사용자로서 부담; 결혼 부분 지원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보편적 제도) : 10년 이상의 시민권 및 20년 이상의 거주, 가이아나에서 2년 이내의 일시 부재 요건을 가진 65세인 자. 해외 지급 불가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150주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한 75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을 가지고 있는 60세 도달자
  - 가입자가 1969년 당시 35세 이상이었던 경우, 매 1년당 25주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600주까지 인정됨
  - 가입자가 상병, 출산, 산재 급여를 받아 온전히 기여한 매 1주당에도 각각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
  - 근로를 할 수 있음
  - 해외 지급 가능
- 노령수당(사회보험)
  - 60세 이전 5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한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750주 미만인 60세 도달자
  - 가입자가 1969년 당시 35세 이상이었던 경우, 매 1년당 25주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600주까지 인정됨
  - 가입자가 상병, 출산, 산재 급여를 받아 온전히 기여한 매 1주당에도 각각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
  - 해외 지급 가능

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16~59세이고 산재결과가 아닌 영구적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되었으며 15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한 25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이 있어야 함; 또한 최소 26주 이상 근로능력상실 상태였어야 하고 상병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아야 함
  - 가입자가 1969년 당시 35세 이상이었던 경우, 그리고 가입자가 60세 도달 전 장애 발생 시점부터 매 1년당 25주의 보험기간이 인정되어 최대 600주까지 납부기간으로 인정됨
  - 가입자가 상병, 출산, 산재 급여를 받아 온전히 기여한 매 1주당에도 각각 보험료 납부기간이 인정
  - 국민보험의료위원회에서 근로능력상실 정도를 판정
  - 장애연금은 60세에 중지되고 사회보험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  - 상시간병수당 :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
  - 해외지급 불가
- 장애수당(사회보험)

- 16~59세이고 영구적 근로능력 상실 판정받았으며 50주 이상 150주 미만 보험료 납부 기간 및 최소 26주 이상 근로능력 상실상태인 자
- 장애공공부조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 - 생계수단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고 영구적 근로능력상실 또는 근로능력상실을 초래하는 일시적 치료상태에 있는 빈곤자

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 또는, 사망 당시 16~59세로, 보험료 납부기간 150주를 포함한 보험료 납부 또는 인정기간이 250주 이상 있었던 자
  - 가입자가 1969년 당시 35세 이상이었던 경우 매 1년당 25주의 보험기간이 인정되어 최대 600주까지 납부기간으로 인정됨
  - 가입자가 상병, 출산, 산재 급여를 받아 온전히 기여한 때 1주당에도 각각 보험료 납부기간이 인정
  - 수급권자 : 영구 근로능력상실 또는 사망자의 자녀를 임신하거나 16세까지 부양하며 사망자와 함께 살았거나 사망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45세 이상의 미망인; 영구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받았으며 사망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45세 이상의 홀아비; 사망자가 부양하던 18세 미만의 완전 고아
  - 유족배우자 연금은 재혼 시 정지
  - 재혼일시금 : 재혼 시 지급
  - 아동보조금이 지급되며 재혼 혹은 동거 시에도 지속됨
  - 해외지급 가능
- 유족수당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수당 수급자였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
  - 수급권자 : 영구 근로능력상실 또는 사망자의 자녀를 임신하거나 16세까지 부양하며 사망자와 함께 살았거나 사망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45세 이상의 미망인; 영구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받았으며 사망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45세 이상의 홀아비; 사망자가 부양하던 18세 미만의 완전 고아
  - 유족급여는 해외지급 가능
- 장제비(사회보험제도) : 장례비를 지급한 자에게 지급. 사망자 또는 그 배우자가 50주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하며 해외지급 불가

## 6

###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보편적 제도) : 월 G\$20,500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가입자의 평균 주당 소득의 40% + 750주를 초과하는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 50주마다 평균 주당 소득 1%씩 가산, 월별 지급
- 평균 주당 소득은 60세 이전 최종 5년 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3년간의 소득을 보험료 납부 주수로 나누어 산정
- 최저 월 노령연금액 : 공공부문 근로자 법정 최저임금(G\$64,200)의 50%
- 최대 주 노령연금액 : 주당 평균 소득의 60%
- 급여주기 : 월 지급
- 노령수당(사회보험)
  -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 가입자의 평균 연소득 8.33%에 50주당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 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  - 평균 연간 소득은 60세 이전 최종 5년 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3년간의 소득을 보험료 납부연수로 나누어 산정

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가입자의 주당 평균 소득의 30%에 250주를 초과하는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 50주마다 1%씩 가산
  - 주당 평균 소득은 장애 발생 이전 최종 5년 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3년간의 소득을 보험료 납부 주수로 나누어 산정
  - 최저 월 장애연금액 : 공공부문 근로자 법정 최저임금(G\$64,200)의 50%
  - 최대 주 장애연금액 : 가입자의 주당 평균 소득의 60%
  - 급여시기 : 월 지급
  - 상시간병수당 : 일당 G\$200씩 최대 26주까지 지급
- 장애수당(사회보험)
  - 가입자의 평균 연소득의 8.33%에 50주당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  - 평균 연소득은 장애 발생 이전 최종 5년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3년간의 소득을 보험료 납부연수로 나누어 산정
- 장애사회부조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 - 영구적 근로능력상실(근로능력상실을 초래하는 일시적 치료상태에 있는 빈곤자에게는 6개월)빈곤자에게 1년 동안 월 최대 G\$7,500까지 지급

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배우자연금
   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 지급
    - 최저 월 배우자연금액 : 공공부문 근로자 법정 최저임금(G\$64,200)의 25%
    - 재혼 시 배우자연금(주 단위)의 52배를 일시금으로 지급
    - 자녀 보조금 : 자녀 1인당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

- 16.67%를 지급하며 최대 3명까지 가능
- 완전고아연금
  - 자녀 1인당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33.33%를 지급하며 최대 3명까지 가능
  - 최저 완전고아연금액 : 공공부문 근로자 법정 최저임금의 16.5%
- ※ 합산된 모든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자 연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유족수당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받을 자격이 있었던 노령수당과 동일한 일시금을 지급. 일시금이 최소 노령 또는 장애 최저연금액의 60배를 초과하면 연금형태로 지급
  - 최저 월 노령 혹은 장애연금액은 공공부문 법정 최저임금(G\$62,200)의 50%임
- 장제비 : 장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에게 G\$48,882를 일시금으로 지급

## 7 관리운영기관

### ○ 재정부(Ministry of Finance)

- [www.finance.gov.gy](http://www.finance.gov.gy)
- 전반적인 감독

### ○ 국민보험공단(National Insurance Scheme)

- [www.nis.org.gy](http://www.nis.org.gy)
- 국민보험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보험료 징수 및 사회보험제도 운영

### ○ 사회서비스부(Department of Social Services)

- 사회보호부(Ministry of Social Protection, <http://dpi.gov.gy>)의 지시를 받아 보편적 제도 및 사회부조제도 운영

<2019년 ISSA 자료>